

발표자료

#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2010. 12.

손원익

# 목 차

I.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 .....	1
1. 준조세의 개념 .....	1
2. 준조세의 범위 .....	5
II. 부담금의 분류 및 현황 .....	8
1. 부담금의 분류 .....	8
2. 부담금 현황 .....	8
III. 준조세의 규모 .....	19
1. 준조세 규모 산출을 위한 부담금 분석 .....	19
2. 준조세 규모 산출을 위한 사회보험료 분석 .....	24
3. 2009년 준조세 규모 산출 .....	25
4. 연도별 준조세 규모 산출 및 추이 분석 .....	28
IV. 기부금의 비자발성 조사 .....	33
1. 기업의 준조세 실태조사 .....	33
가. 실태조사 개요 .....	33
나. 실태조사 결과 .....	34
다. 준조세 산출 .....	42
V. 요약 및 정책방향 .....	45
참고문헌 .....	51

## 표목차

<표 I-1> 광의의 준조세의 종류 .....	6
<표 II-1> 연도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	9
<표 II-2> 부처별 부담금 수 .....	9
<표 II-3> 연도별 부담금 징수규모 .....	10
<표 II-4> 2009년 징수액 변동 내역 .....	11
<표 II-5> GDP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과 GDP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	13
<표 II-6>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2009~2008년) .....	14
<표 II-7> 귀속주체별 부담금(2009) .....	15
<표 II-8> 부처별 귀속주체별 부담금(2009) .....	17
<표 II-9> 분야별 부담금 사용추이 .....	18
<표 III-1> 연도별 부담금 징수액 추이 .....	19
<표 III-2> 각 부담금의 준조세 판단 근거 .....	22
<표 III-3> 2009년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규모 .....	24
<표 III-4> 연도별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규모 .....	25
<표 III-5> 2009년 준조세 규모 .....	25
<표 III-6> 연도별 법인세율 현황 .....	26
<표 III-7> 법인세를 고려한 2009년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 .....	27
<표 III-8> 2009년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 규모 .....	27
<표 III-9> 법인세를 고려한 2009년 부담금 규모 .....	28
<표 III-10>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징수액 추이 .....	28
<표 III-11>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징수액 증가율 추이 .....	29
<표 III-12> 정부의 세수 및 GDP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	30
<표 III-13> 법인세 징수액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	31
<표 III-14> 각사업연도 당기순이익(흑자법인)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	32

<표 IV-1> 2010년 업종 및 기업형태별 응답자 특성 .....	33
<표 IV-2> 2010년 기부금별 자발성 결과 .....	35
<표 IV-3> 법정기부금 유형별 자발성 결과 .....	36
<표 IV-4> 특례기부금의 유형별 자발성 결과 .....	37
<표 IV-5> 지정기부금의 유형별 자발성 결과 .....	38
<표 IV-6> 업종별 자발성 결과 .....	39
<표 IV-7> 법인규모별 자발성 결과 .....	40
<표 IV-8> 분야별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 .....	41
<표 IV-9> 2009년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 .....	42
<표 IV-10> 2009년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 .....	43
<표 IV-11> 2009년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 .....	44
<표 IV-12> 기부금을 고려한 2009년 준조세 규모 .....	44

## 그림목차

[그림 II-1] GDP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과 GDP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	13
[그림 II-2] 귀속주체별 부담금(2009) .....	16
[그림 II-3]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추이(2009) .....	18
[그림 III-1]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징수액 증가율 추이 .....	29
[그림 III-2] 조세 및 GDP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비중의 변화(2003-2009) ...	30

# I.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

## 1. 준조세의 개념

- 준조세에 범위에 대한 논의에 앞서 준조세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하여 논의함
  - 준조세와 관련된 개념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는 부담금, 분담금, 공과금, 부과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기부금, 성금 등이 있음
  - 이들 중 부담금, 분담금, 공과금, 부과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은 의무가 법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기부금과 성금에 대한 의무는 법령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기부금과 성금의 경우에도 권유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
  
-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라고 정의됨(이상우·임혁진, 1995)
  - 한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로 정의
  - 먼저,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부과한다는 특징을 가지며, 따라서 부담금은 강제성을 띠게 되며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띤

- 둘째,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정부사업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와는 차별성을 가짐
- 셋째, 개별 경제주체가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의 규모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비하여, 조세는 담세 능력을 바탕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름
  -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업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부담금과는 구분됨
- 넷째,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금전적 부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금전적 부담은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음

□ 부담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부담금에 포함되는 용어로는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이 있음

- 분담금은 부담금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 즉,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는 조세 외의 금전적 지급의무로 규정됨
  - 그러므로 분담금은 부담금과 같은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분담금을 이와 같이 정의할 경우 분담금은 부담금에 포함되는 개념이 됨<sup>1)</sup>
- 부과금은 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

1) 대표적 분담금으로는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분담금, 손해 배상보장사업 분담금,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분담금 등이 있다.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정액의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며, 이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은 거래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임<sup>2)</sup>

- 부가금은 부과금과 거의 흡사한 성격을 가진 금전적 부담임. 다만, 부담의 기준이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과금과 다름<sup>3)</sup>
- 부담금에 포함되는 또 다른 금전적 부담으로는 예치금이 있음. 소하천소요공사비에치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원상회복예치금, 복구예치금 등이 대표적 예치금에 해당됨
  - 이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치금은 정부가 특정 행동을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부담을 지게 한 다음 정부가 의도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금전적 부담을 해지시켜 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여러 가지 기금출연금도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담금의 한 종류로 취급할 수 있음. 대표적 기금출연금으로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등이 있음
- 한편, 기여금도 기금출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이 이에 해당됨

□ 공과금이란 용어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으로,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으로 정의됨<sup>4)</sup>

---

2) 부과금의 예로는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축산폐수등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등을 들 수 있다.  
3) 부가금의 대표적 예로는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들 수 있다.  
4) 예를 들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부과금, 수산업법에 의한 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과 같은 것들이 공과금의 범주에 포함된다.

-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사회보험료도 공과금에 속함.<sup>5)</sup> 또한 과태료, 벌금·과료, 범칙금,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도 공과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 국세기본법에 정의된 공과금 개념을 받아들일 경우, 공과금은 법령에 규정된 납부 의무를 기초로 한다는 특징을 지님. 즉,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채권에 제한됨
    - 둘째, 공과금은 조세와는 확연히 구분되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공과금은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조세와는 엄격히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셋째, 공과금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반드시 관계가 없을 필요는 없다는 특징을 가짐. 따라서 공과금은 부담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인적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법제연구원, 2002)
- 이와 같이, 수수료는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띠지 않는 부담금과는 구별됨
- 한편,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법제연구원, 2002)
- 따라서 사용료도 수수료와 같이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며, 부담금과는 차별성을 띠게 됨
- 기부금은 기업 등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타인에게 금전이나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증여한 경우에 그 금전이나 기타 자산의 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함(손원익 외, 1998)
- 기부금은 현금, 성금, 찬조금, 후원금 등으로도 표현되며, 이러한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것으로 취급됨

5)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이 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부금의 납부에 있어서 공권력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의뢰·권유 등의 방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

## 2. 준조세의 범위

- 준조세는 주로 기업이 지게 되는 조세 이외의 부담과 관련된 개념으로 학문적 근거 또는 실정법에 기초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아님
  -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조세나 조세를 제외한 여러 가지 부담을 지게 되는데, 만약 조세를 제외한 여러 가지 부담이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비용과 같은 부담으로 작용
  - 기업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준조세를 정의하면, 기업의 부담이 강제성을 띠는지 여부와 직접적 반대급부의 성격을 띠는지의 여부가 준조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준조세의 정의에 있어서 핵심 요건이 되는 「강제성」에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
  - 법령에서 명백히 정해지는 금전적 부담처럼 강제성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도 있으나 기부금과 같이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는 경우도 있음
  - 법령에 의해 명백히 정해지지 않은 금전적 부담의 경우에는 기업이 체감하는 강제성의 정도를 판단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업의 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준조세를 정의할 경우 기업 부담의 성격에 따라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광의의 준조세는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에서 직접적인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부담하는 것과 과태료 성격의 부담을 제외한 모든 부담으로 정의
  - 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으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각종 공과금,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성금 등이 있음

- 사용료와 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에 해당되므로 준조세에 포함되지 않음
- 각종 공과금 중 과태료, 벌금·과료, 범칙금,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준조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기부금의 경우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어야 준조세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는 확실히 정할 수 없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추정하는 방법이 활용 가능함

□ <표 1-1>은 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을 나타냄

<표 1-1> 광의의 준조세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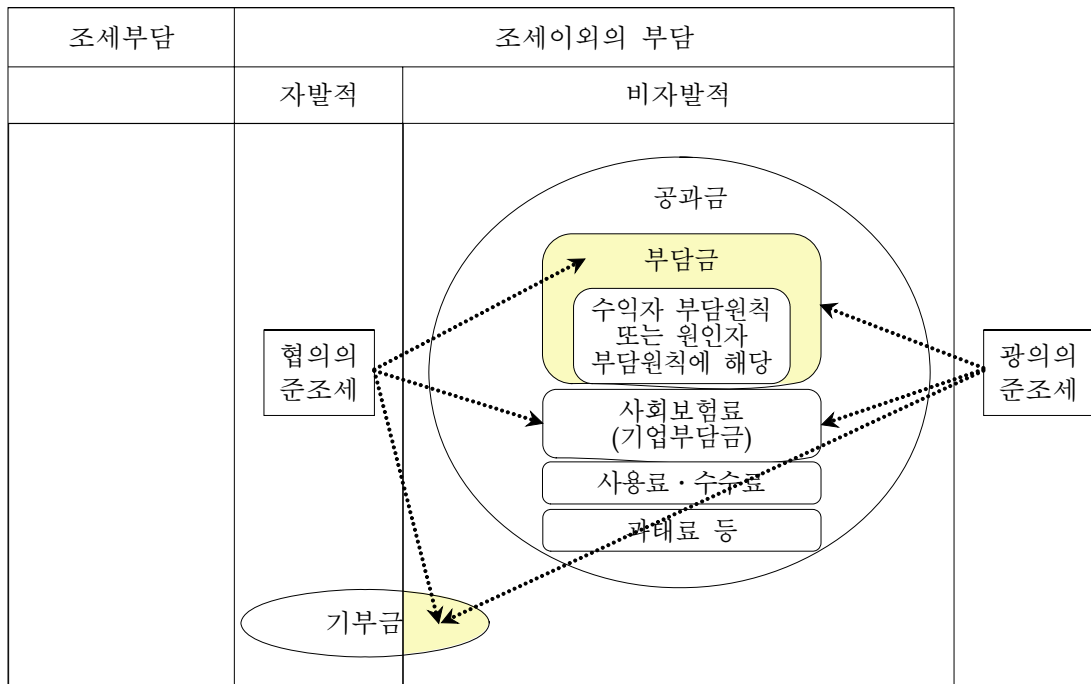
준조세의 종류	세 부 내 용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각종 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여금, 기금출연금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강제적 기부금·성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강제성을 띤 정치자금 등

□ 광의의 준조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축소하여 협의의 준조세로 정의할 수 있음

- 선행 연구에 의하면, 광의의 준조세 중 사업자의 부담이 1)사업자가 받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2)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을 협의의 준조세로 정의
- 협의로 준조세를 정의할 경우 여기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사회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이나 성금

-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도 보험수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험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이므로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되지 않음
  - 사회보험료 중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기업이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
  
- 이상에서 논의한 준조세의 범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준조세의 정의는 절대적일 수 없으나, 앞에서 설명한 큰 틀 내에서 적절한 범위의 준조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기업의 부담>



주: 1) 사회보험료는 기업의 부담 부분만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됨.  
 2) 기부금, 성금 등은 강제성을 띠는 경우에만 준조세에 포함됨.

## Ⅱ. 부담금의 분류 및 현황

### 1. 부담금의 분류

- 준조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담금은 부담금의 성격, 사용용도, 소관부처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됨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부담금의 성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첫째, 공공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그 수선·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손괴자 부담금)
    - 둘째,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비용을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는 경우(이용자·원인자 부담금)
    - 셋째, 공공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경우(수익자 부담금)
    - 넷째, 해당사업의 복구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예치하고 복구완료 후 반환하는 경우(예치금)
    - 다섯째,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지만 부과대상과 사용내역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조세성 부담금)

### 2. 부담금 현황

- <표 II-1>의 '연도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담금은 1961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부터는 거의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음
  - 1980년대에 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62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어 가장 많은 부담금이 신설되었으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도입되기 직전인 2001년 말 기준 총부담금 수가 101개에 이르렀음
  -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수를 유지하며, 2000년대에는 100개를 기준으로 증감하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99개의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음

<표 II-1> 연도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단위: 개)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sup>1)</sup>
증가	7	7	20	62	3	12	2	6	2	1	6	8	1	-
감소	-	-	-	1	-	9	1	8	-	1	8	6	2	2
누계	7	14	34	95	98	101	102	100	102	102	100	102	101	99

주: 1) 2009년도 보고서는 예치금·보증금에 대해 현금예치 외에 보증보험, 공제조합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2009년도 및 그 이전의 부담금 수와 징수실적을 산정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 <표 II-2>는 2009년 각 부처별 부담금 운용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23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어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국토해양부가 22개를 운용
- 두 부처가 운용하는 부담금의 개수의 합은 모두 45개로 전체 부담금 수의 45.5%에 해당함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이어 그 다음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11개, 지식경제부가 10개, 금융위원회가 8개, 문화체육관광부가 6개, 산림청이 5개 교육과학기술부가 3개,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각각 2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이 각각 1개의 순서로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음

<표 II-2> 부처별 부담금 수

(단위: 개)

합계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99	23	22	11	10	8	6	5	3	각 2	각 1

주: 2009. 12. 31.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표 II-3> 연도별 부담금 징수규모

(단위: 억원, %)

	부담금규모	증가율	GDP	GDP 대비 부담금 비중
2001	67,683		6,514,153	1.04
2002	79,012	16.74	7,205,390	1.10
2003	93,005	17.71	7,671,137	1.21
2004	101,508	9.14	8,268,927	1.23
2005	112,647	10.97	8,652,409	1.30
2006	121,132	7.53	9,087,438	1.33
2007	145,882	20.43	9,750,130	1.50
2008	152,707	4.68	10,264,518	1.49
2009	148,047	-3.05	10,630,591	1.39

주: GDP는 명목, 원화표시, 2005년 기준 연간지표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0-09-27.

- <표 II-3>은 연도별 부담금 징수규모를 나타내며, 2009년 말 기준 부담금관리기  
 본법에 의한 부담금 규모는 14조 8,047억원에 이르고 있음
  - 2009년도 부담금의 총징수실적은 2008년에 비해 4,660억원이 감소한 14조  
 8,047억원으로 GDP 대비 1.39%에 해당함
  - GDP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부담금  
 관리기본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한 후 2006년  
 에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
  
- 2009년 기준 부담금규모는 전년 대비 3.05% 하락하였고, GDP에서 부담금이 차지  
 하는 비중도 1.39%로 전년 대비 0.1%p 하락하였음
  - 2001년 이후 연도별 부담금 징수규모를 보면 2009년에 처음으로 부담금의 규  
 모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1년 이후 처음으로 2009년에 부담금 징수규모가 하락한 원인은 부담금의 총 개수의 변화와 각 부담금의 증감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음
- 첫째,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현황을 통해 부담금의 총 개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부담금의 감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음
  - 2009년 기준 부담금 수는 총 99개로 2008년과 비교하여 2개 감소하였으며, 2009년도 중 신설된 부담금은 없는 반면 2개의 부담금이 폐지되었음
  - 2009년 부대공사비용부담금('09.5)과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09.6)이 폐지되었으나 이 두 가지 부담금은 2009년까지 부과·징수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금의 총 개수의 변화가 부담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표 II-4> 2009년 징수액 변동 내역

(단위: 억원)

부담금명	'08실적	'09실적	증 감	주요 증감사유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지 식 경 제 부)	-	1,792	△1,792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08제정, '09시행
개발부담금 (국 토 해 양 부)	1,266	2,734	△1,468	○ 개발사업 완료건수 증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국 토 해 양 부)	1,171	2,619	△1,448	○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입지 증가 - 영등포교도소 이전(부담금 700억원), 군포시 물류센터(부담금 60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금 융 위 원 회)	7,472	8,656	△1,184	○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의 평균잔액 증가
농지보전부담금 (농림수산식품부)	14,126	6,973	▽7,153	○ '07~'08년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했던 징수규모가 예전수준으로 감소
산림복구비용예치금 (산 립 청)	10,340	9,114	▽1,226	○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면제대상 증가 - 산지전용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과밀부담금 (국 토 해 양 부)	1,558	586	▽972	○ 대형건축물 준공건수의 감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8,830	17,877	▽953	○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감소
· 소 계(A)	54,763	50,351	▽4,412	
· 그 외 부담금(B)	97,944	97,696	▽248	
· 총 계(A+B)	152,707	148,047	▽4,660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재구성

- 둘째, <표 II-4>에 나타난 개별 부담금의 증감 내역을 통해 2009년 부담금규모의 감소 원인을 살펴볼 수 있음
  - 2009년에는 농지보전부담금(농림수산물식품부), 산림복구비용예치금(산림청), 과밀부담금(국토해양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등이 감소하였음
  - 감소액이 가장 큰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2007~2008년 시행된 신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규모가 예년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7,153억원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음
  
- 따라서 2009년 부담금 규모가 하락한 원인을 종합해 보면, 부담금 개수의 변화에 기인하기보다는 각각의 부담금의 증감으로 인해 총징수 실적이 감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표 II-5>는 GDP 대비 조세의 비중과 GDP 대비 부담금의 비중 및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GDP 대비 조세의 비중은 연도에 따라 약간의 증감을 거듭하며, 2001년 이후 2009년까지 평균 19.48%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GDP 대비 조세의 비중은 19.73%로 전년 대비 1%p 하락하였음
  - 2001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GDP 대비 부담금의 비중은 평균 1.29%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 다소 하락하였음
  - GDP 대비 조세의 비중과 GDP 대비 부담금의 비중을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II-1]과 같음

<표 II-5>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단위: 억원, %)

	조세 (천억원)	GDP	GDP 대비 조세 비중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	GDP 대비 부담금 비중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2001	1,225	6,514,153	18.81	-	1.04	-
2002	1,355	7,205,390	18.81	0.00	1.10	5.54
2003	1,478	7,671,137	19.27	2.45	1.21	10.56
2004	1,520	8,268,927	18.38	-4.59	1.23	1.25
2005	1,634	8,652,409	18.88	2.74	1.30	6.05
2006	1,793	9,087,438	19.73	4.48	1.33	2.38
2007	2,050	9,750,130	21.03	6.56	1.50	12.25
2008	2,128	10,264,518	20.73	-1.40	1.49	-0.57
2009	2,097	10,630,591	19.73	-4.85	1.39	-6.39
평균	-	-	19.48	-	1.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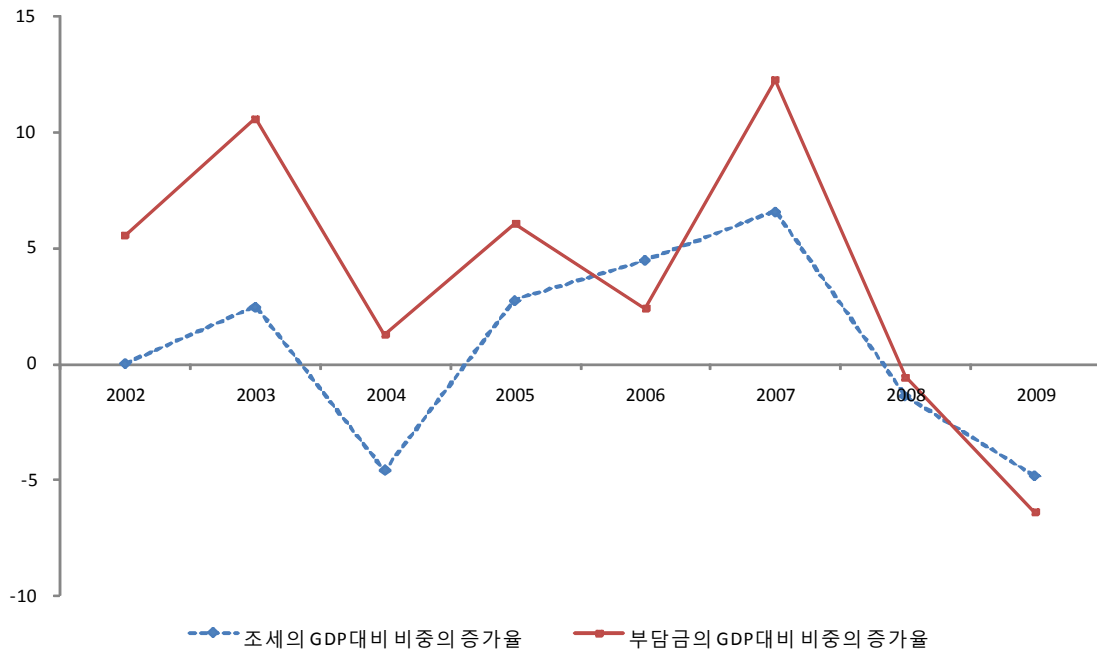
주: GDP는 명목, 원화표시, 2005년 기준 연간지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1]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단위: %)



- 다음 <표 II-6>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각 부처별 부담금 징수규모를 나타냄
-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지식경제부의 부담금 징수규모가 3조 6,259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24.49%를 차지하여 가장 큼
  - 2009년 기준 지식경제부의 뒤를 이어 금융위원회가 2조 8,057억원으로 18.95%를 차지하고, 환경부가 2조 5,323억원을 징수하여 전체 부담금의 17.09%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6>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2009~2008년)

(단위: 억원, %)

소관 부처	2009년		2008년	
	금액(구성비)		금액(구성비)	
금융위원회	28,057	(18.95)	26,105	(17.09)
기획재정부	-	(-)	-	(-)
교육과학기술부	3,577	(2.42)	3,558	(2.33)
외교통상부	506	(0.34)	516	(0.34)
행정안전부	538	(0.36)	1,133	(0.74)
문화체육관광부	3,569	(2.41)	3,715	(2.43)
농림수산식품부	8,200	(5.54)	15,266	(9.99)
지식경제부	36,259	(24.49)	35,472	(23.22)
보건복지가족부	16,380	(11.06)	16,369	(10.71)
환경부	25,323	(17.10)	24,323	(15.92)
노동부	2,559	(1.73)	2,496	(1.63)
국토해양부	10,435	(7.05)	9,653	(6.32)
소방방재청	5	(0.003)	35	(0.02)
산림청	10,541	(7.12)	11,939	(7.82)
방송통신위원회	1,399	(0.95)	1,574	(1.03)
중소기업청	698	(0.47)	626	(0.41)
합계	148,047	(100.00)	152,780	(100.00)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 <표 II-7>과 [그림 II-2]는 2009년 기준 부담금이 사용되기 위하여 귀속되는 귀속 주체별 금액 및 비중을 나타냄

- 2009년 징수된 총 14조 8,047억의 부담금 중에서 79.5%는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9.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으며, 11.05%는 공단 등 기타기관에 귀속됨
-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부담금은 기금과 특별회계로 분배되며,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부담금 중에서 기금으로 귀속되는 규모가 전체 부담금의 57.0%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규모가 전체 부담금의 22.5%를 차지하여 기금에 귀속되는 규모가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규모의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부담금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배되며,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부담금은 전체 부담금의 3.9%이고, 기초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부담금은 전체의 5.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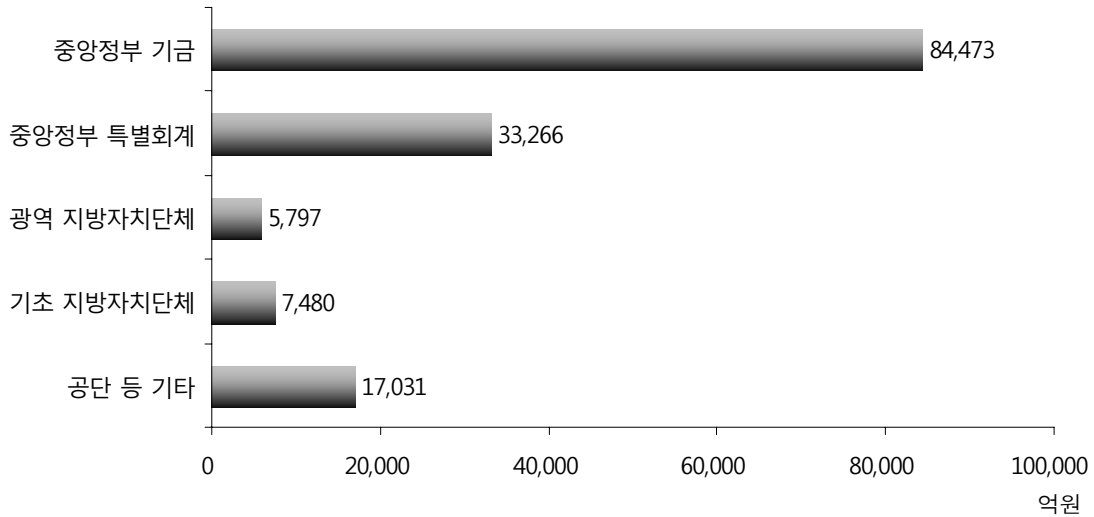
<표 II-7> 귀속주체별 부담금(2009)

(단위: 억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징수금액	84,473	33,266	5,797	7,480	17,031	<b>148,047</b>
비율	57.0	22.5	3.9	5.1	11.5	100.0
징수금액	117,740		13,277		17,031	<b>148,047</b>
비율	79.5		9.0		11.5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재구성

[그림 11-2] 귀속주체별 부담금(2009)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 <표 II-8>은 부처별로 징수되는 부담금이 귀속되는 주체별로 부담금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부담금이 중앙정부의 기금으로 모두 귀속되는 부처는 금융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산림청·방송통신위원회로 모두 9개 부처가 해당되며,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모두 귀속되는 부처에 해당됨
- 부담금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되는 부처로는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가 해당되며, 부담금이 공단 등 기타 기관에 귀속되는 부처에는 소방방재청·중소기업청이 있음
- 이와 같이 부담금의 귀속주체가 다양한 부처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부담금의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커서 부담금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II-8> 부처별 귀속주체별 부담금(2009)

(단위: 억원)

소관부처	부담금합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금융위원회	28,057	27,951	-	-	-	106
교육과학기술부	3,577	1,811	-	1,353	20	392
외교통상부	510	367	-	-	-	142
행정안전부	538	-	-	381	157	-
문화체육관광부	3,569	3,541	-	-	-	27
농림수산식품부	8,200	7,861	-	4	6	329
지식경제부	36,258	15,128	18,989	-	-	2,141
보건복지부	16,380	16,380	-	-	-	-
환경부	25,323	7,284	8,226	1,908	5,147	2,758
노동부	2,559	2,559	-	-	-	-
국토해양부	10,435	191	4,799	2,151	2,149	1,145
소방방재청	5	-	-	-	-	5
산림청	10,541	-	1,252	-	-	9,289
방송통신위원회	1,399	1,399	-	-	-	-
중소기업청	698	-	-	-	-	698
합계	148,047	84,473	33,266	5,797	7,480	17,031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 <표 II-9>와 [그림 II-3]은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규모를 나타내며, 부담금 사용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정보·에너지 분야로 3조 6,258억원을 사용하여 전체 부담금의 24.5%를 사용
- 그 다음은 금융 분야로 2조 8,057억원을 사용하여 전체 부담금의 19.0%가 사용되었고, 환경 분야는 2조 5,323억원으로 17.1%를 사용하였음
  - 그 밖에도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11.1%를 사용하였고, 건설·교통 분야는 6.8%를 사용하였음
  - 그리고 산업·정보·에너지, 금융, 환경, 보건·의료 분야, 건설·교통 분야에 속하지 않는 기타 영역에 사용된 부담금이 총 3조 1,941억원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하여 부담금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9> 분야별 부담금 사용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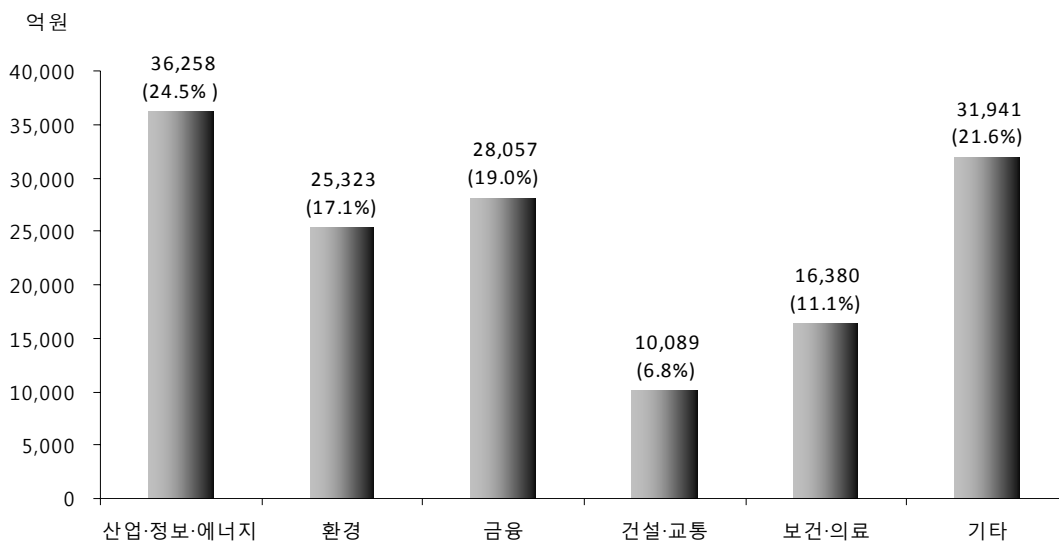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산업·정보·에너지	환경	금융	보건·의료	건설·교통	기타	총계
2001	31,124 (43.90)	10,908 (15.39)	5,905 (8.33)	138 (0.20)	5,425 (7.65)	17,391 (24.53)	70,892 (100.00)
2002	27,456 (35.10)	13,348 (17.07)	6,949 (8.88)	5,109 (6.53)	5,630 (7.20)	19,724 (25.22)	78,215 (100.00)
2003	22,591 (24.60)	16,744 (18.23)	14,566 (15.86)	7,020 (7.64)	6,739 (7.34)	24,170 (26.32)	91,831 (100.00)
2004	25,094 (24.99)	18,217 (18.14)	16,158 (16.09)	8,061 (8.03)	8,164 (8.13)	24,721 (24.62)	100,415 (100.00)
2005	32,313 (28.27)	20,113 (17.60)	18,754 (16.41)	12,915 (11.30)	8,302 (7.26)	21,900 (19.16)	114,296 (100.00)
2006	31,336 (26.22)	19,425 (16.25)	18,008 (15.07)	14,940 (12.50)	9,286 (7.77)	26,539 (22.20)	119,534 (100.00)
2007	33,793 (23.5)	22,511 (15.7)	22,987 (16.0)	13,982 (9.7)	15,486 (10.8)	34,892 (24.3)	143,650 (100.0)
2008	35,464 (23.2)	24,323 (15.9)	26,105 (17.1)	16,369 (10.7)	9,162 (6.0)	41,284 (27.0)	152,707 (100.0)
2009	36,258 (24.5)	25,323 (17.1)	28,057 (19.0)	16,380 (11.1)	10,089 (6.8)	31,941 (21.6)	148,047 (100.0)

주: ( )안은 분야별 구성비임.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그림 II-3]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추이(2009)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 Ⅲ. 준조세의 규모

□ 본장에서는 제 I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준조세를 광의와 협의로 분류하여 그 규모를 산출함

#### 1. 준조세 규모 산출을 위한 부담금 분석

□ <표 III-1>은 부담금을 징수하는 소관부서별로 연도별 부담금 징수액 규모와 부담금이 준조세에 포함되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음

- 각 부담금의 성격을 분석하여 포함되는 광의/협의를 준조세 범위를 결정함
- 부담금이 광의와 협의에 모두 ○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담금이 광의의 준조세에도 해당하고, 협의의 준조세에도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광의에 ○로 표시되어 있으나 협의에 ×로 표시되어 있으면 해당 부담금이 광의의 준조세에는 해당하지만, 협의의 준조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표 III-1> 연도별 부담금 징수액 추이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부담금 분류(2009년 기준)	광의	협의	징수액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	x	110,998	125,864	136,950	142,510	246,698	430,633	421,037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	x	32,041	43,769	48,124	88,112	124,769	160,086	174,187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	x	212,202	228,174	609,702	200,821	400,633	437,873	470,217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출연금	○	x	424,270	456,280	305,976	536,947	694,021	769,336	812,363
금융위원회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	x	10,095	10,451	10,876	10,915	11,172	10,277	10,553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	x	0	41,759	43,489	44,202	43,627	55,094	51,652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	x	624,721	656,994	662,771	713,270	727,962	747,159	865,568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2007년 신설)	○	x					1	24	92
기획재정부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	41,715	52,808	57,510	64,017	49,581	0	0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용지부담금	○	x	195,307	178,870	38,838	119,744	168,391	149,097	137,299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	x	139,843	155,567	155,476	174,728	178,499	171,532	181,149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비용부담금	○	x	22,625	25,155	27,315	31,150	35,302	36,510	39,237
외교통상부	국제교류기여금	○	○	28,475	33,888	37,205	43,160	44,972	36,629	36,746
외교통상부	국제빈곤퇴치기여금(2007년 신설)	○	○					3,357	14,892	14,20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	x	142,012	142,905	134,158	102,004	105,149	113,308	53,781
문화체육관광부	출국납부금	○	○	51,599	88,826	124,574	136,363	152,104	154,020	138,450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사업자납부금	○	○	82,528	99,173	111,714	118,859	121,167	151,672	169,313

소관부서	부담금 분류(2009년 기준)	광의	협의	징수액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부담금	○	x	1,170	1,299	1,517	1,536	1,503	1,516	1,61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	x	0	0	0	2,609	1,779	1,255	689
문화체육관광부	회원제골프장 시설임장료 부가금	○	○	30,022	32,737	34,999	36,349	41,373	37,255	20,024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2007년 신설)	○	○					15,449	26,161	26,799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복구비용예치금	○	x	24,282	29,764	25,162	29,736	26,219	25,111	32,904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	x	422,657	448,761	466,772	466,443	872,149	1,412,643	697,320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수입이익금(농안법)	○	○	60,787	64,356	59,977	76,162	59,706	42,098	63,135
농림수산식품부	쓰레기유발부담금	○	x	1,553	1,321	1,073	279	4	3	3
농림수산식품부	양곡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	○	474	627	657	10,276	23,597	36,557	12,360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	○	○	205	399	121	228	173	236	406
농림수산식품부	대체초지조성비	○	x	1,203	781	3,044	3,152	2,284	1,319	2,891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수입이익금	○	○	1,554	2,143	1,032	1,799	1,047	1,357	1,441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 (2004년 신설)	○	○		14	32	0	1	22	32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수입이익금 (2007년 신설)	○	○					4,123	6,271	8,493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자원조성금	○	x	824	713	964	631	589	956	990
지식경제부	안전관리부담금	○	x	89,608	91,655	94,931	100,950	104,076	109,992	105,274
지식경제부	광물수입·판매부과금	○	○	0	0	0	0	0	0	0
지식경제부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	x	26	21	15	3	5	5	4
지식경제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 부과금	○	x	810,562	1,023,258	1,471,122	1,717,887	1,844,895	1,882,968	1,787,673
지식경제부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	x	1,236	1,116	802	778	470	298	302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	x	997,084	1,065,177	1,112,102	1,006,243	1,044,087	1,110,614	1,191,734
지식경제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 담금	○	x	126,196	116,401	106,895	136,562	198,365	249,669	214,062
지식경제부	광해방지업무자 부담금 (2006년 신설)	○	x				0	10,508	10,227	5,991
지식경제부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	x	227,672	223,151	156,111	171,565	180,933	182,650	141,590
지식경제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2009년 신설)	○	x						0	179,18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	702,006	806,136	1,292,132	1,494,021	1,548,599	1,636,923	1,637,981
보건복지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비용 부담금	○	x	0	0	0	0	0	0	0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	○	x	6,850	6,655	7,076	6,384	7,447	5,446	6,000
환경부	수질개선탄금	○	x	13,325	14,638	16,979	18,958	19,356	21,750	19,028
환경부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	x	160,759	189,008	158,605	147,284	268,716	218,168	176,085
환경부	수질보전법상 배출부과금	○	x	7,391	6,274	3,984	4,867	5,459	5,313	2,761
환경부	원상회복예치금	○	x	581	526	889	810	257	182	523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	x	11,946	34,629	36,881	42,728	58,993	85,221	111,794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	x	46,786	35,211	44,880	50,538	56,614	46,476	56,189
환경부	재활용부과금(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	x		4,109	3,533	4,204	3,373	4,129	5,234
환경부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	x	444,005	485,889	598,889	432,429	519,151	478,289	529,260
환경부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	x	114,061	120,953	133,743	150,010	172,055	198,577	243,497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	x	896	5,229	3,990	4,757	3,592	4,817	8,599
환경부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	x	268,644	283,732	304,326	337,907	362,800	386,266	397,652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	○	482,923	524,725	570,126	601,811	624,845	624,515	619,196
환경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부담금 (2007년 변경)	○	x					20,934	22,313	24,932
환경부	총량초과부과금(금강수계)	○	x	0	-	0	0	11	74	0.2
환경부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	x	44,658	52,457	60,270	68,725	75,972	80,820	83,729
환경부	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수계)	○	x	0		0	14.8	0.0	0.7	1.6

소관부서	부담금 분류(2009년 기준)	광의	협의	징수액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환경부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	x	120,738	130,215	139,979	158,546	166,813	186,040	184,527
환경부	총량초과부과금(영산강·섬진강수계)	○	x	0		0	0	0	0	0
환경부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	○	x	38,492	43,274	46,773	51,370	57,549	63,931	62,483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총량초과부과금(2004년 신설)	○	x			0	0	0	0	0
환경부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2008년 신설)	○	x						0	824
환경부	오염총량초과부과금(2007년 신설)	○	x					0	0	0
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	○	60,699	60,845	82,409	90,986	97,934	106,370	110,999
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	○	104,301	118,669	125,910	136,298	151,269	143,249	144,860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	x	101,061	102,510	116,257	167,912	131,284	117,128	261,901
국토해양부	복구예치금	○	x	58,768	59,509	51,259	67,467	62,690	65,945	54,594
국토해양부	개발부담금	○	x	53,012	77,069	122,123	136,833	188,162	126,637	273,444
국토해양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x	182,451	173,151	126,051	138,970	159,271	122,553	120,334
국토해양부	댐건설 수익자부담금	○	x	0	0	0	0	0	0	0
국토해양부	원인자부담금(도로법)	○	x	95	76	75	151	29	42	21
국토해양부	공공시설관리자의비용부담금	○	x	0	0	0	0	0	0	0
국토해양부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	x	0	6	3,013	1,080	8,143	18,998	7,407
국토해양부	혼잡통행료	○	x	15,545	13,823	14,617	14,529	16,109	15,553	15,805
국토해양부	교통유발부담금	○	x	99,075	111,077	122,444	129,457	139,126	154,341	162,730
국토해양부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x	0	0	0	0	1,107	0	738
국토해양부	과밀부담금	○	x	48,151	126,057	115,246	94,410	193,172	155,821	58,586
국토해양부	시설부담금(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	x	0	0	0	0	0	0	0
국토해양부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	○	129,648	136,182	144,033	132,390	130,229	131,067	43,661
국토해양부	소음부담금	○	x	3,132	2,938	2,927	3,179	3,658	3,762	3,797
국토해양부	지하수이용부담금	○	○				0	855	4,388	5,883
국토해양부	재건축부담금(2006년 신설)	○	○					0	0	0
해양수산부	방제분담금	○	x	5,851	5,740	5,887	5,982	6,217	14,892	15,476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2006년 신설)	○	x					742	4,321	6,908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2007년 공포, 2008년 시행)	○	○					0	67	63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x	14,885	16,639	19,374	23,458	16,208	21,591	12,145
국토해양부	기반시설설치비용(2008년 신설)	○	x						0	0
소방방재청	소화천소요공사비에치금	○	x	1,359	4,323	650	1,345	2,382	3,486	493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보증금	○	x	67,470	80,764	91,871	86,646	113,826	135,961	124,929
산림청	임산물수입이익금	○	x	555	942	675	1,554	2,497	978	303
산림청	산림복구비용예치금	○	x	738,003	695,807	473,854	798,225	1,009,906	1,034,048	911,352
산림청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	x	9,720	13,540	10,527	21,728	28,627	22,916	17,502
산림청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법)(2004년 관리 추가)	○	x	0	0	0	0	0	0	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징수금	○	x	140,135	133,829	146,692	142,594	170,045	157,378	139,935
중소기업청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	x				4,025	56,345	62,585	69,815
<b>광의의 부담금 합계</b>				<b>9,300,539</b>	<b>10,150,829</b>	<b>11,264,675</b>	<b>12,113,177</b>	<b>14,588,226</b>	<b>15,270,653</b>	<b>14,804,744</b>
<b>협의의 부담금 합계</b>				<b>1,830,501</b>	<b>2,029,471</b>	<b>2,642,431</b>	<b>2,942,719</b>	<b>3,070,381</b>	<b>3,153,749</b>	<b>3,054,048</b>

주: 부담금 징수액 총액은 폐지된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각연도

- 준조세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그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 부담금의 특성을 분석하여 광의 또는 협의로 분류하였음
- 2004년 이전에 설치된 부담금에 관한 분석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에서 도출된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그 이후 신설된 부담금에 국한하여 광의와 협의를 판단하였음
- <표 III-2>는 2004년 이후 신설된 부담금에 대하여 준조세에 포함되는 범위를 결정한 그 판단 근거를 나타내고 있음

**<표 III-2> 각 부담금의 준조세 판단 근거**

부담금	판단 근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2007년 신설)	- 주택담보에 대한 보증의 대가로 부과하는 부담이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 → 협의에서 제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2007년 신설)	- 부담금 부담자(공항 출국자)와 수혜자(개도국)와 전혀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부담금 → 준조세의 성격(협의를 포함)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2007년 신설)	-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의 경우 외국 영화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모든 영화(한국, 외국)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한국영화의 질이 제고되어 그 수혜가 소비자에게 귀속된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음. →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됨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 (2004년 신설)	- "부담금 납부자와 부담금의 사용용도 및 수혜자"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사업자가 공매과정에서 낙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금 부과 타당성은 인정됨. - 수익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 원칙에 해당하지 않음. - 물론, FTA로 수입업자는 이익을 보고, 농민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익의 일부를 손해 농민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일면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으나 부담금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음.
수산물수입이익금 (2007년 신설)	-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과 동일한 판단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2006년 신설)	- 광산피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사업자)가 비용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금의 성격

부담금	판단 근거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부분적이거나)하는 것으로 평가함. → 협의에서는 제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2009년 신설)	- 사용 후 핵연료 처분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미리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 원칙에 부합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해당 → 협의에서 제외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 원인자 부담원칙에 해당 → 협의에서 제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부담금 (2007년 변경)	- 원인자 부담금 → 협의에서 제외 - 기존의 부담금 명칭이 변경된 것(근거법의 변경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총량초과부과금 (2004년 신설)	-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 → 협의에서 제외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및 자동차)(2008년 신설)	-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 → 협의에서 제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2007년 신설)	-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 → 협의에서 제외
지하수이용부담금	- 성격은 전형적인 원인자부담원칙에 해당하는 부담금이나, 현재 수질개선부담금 및 지역개발세와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의에 포함
재건축부담금(2006년 신설)	-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성격상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으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 문제 및 향후 집값 하락의 경우에 발생할 문제 등 폐지가 권고된 부담금 - 집값 안정이 부과의 목적이므로, 부담금보다는 조세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2006년 신설)	- 부담금의 부과요율이 다소 과하고 귀속되는 기금의 사용용도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지만, 원인자 부담원칙에 해당하는 부담금 → 협의에서 제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2007년 공포, 2008년 시행)	- 성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만, 부담금의 사용용도가 "해양생태계 훼손방지 및 복원" 정도로 국한되어야 밀접한 연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부과대상 중 수입업자의 경우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문제가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 (2008년 신설)	- 지방세와 중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부과의 타당성은 인정됨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 『예치금』의 성격이므로 협의 준조세에서는 제외 - 부담금평가단의 의견처럼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할 필요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법) (2004년 관리 추가)	- 대표적인 원인자부담금에 해당

## 2. 준조세 규모 산출을 위한 사회보험료 분석

- 사회보험료 역시 기업의 부담 중 하나로 준조세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2009년 사회보험료 중에서 준조세에 해당하는 규모를 산출함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으며, 이들 보험은 일정 부문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즉,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2009년 보험료 수입액에서 사업주 부담분을 산출함
  
-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 보장성 보험료를 통해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를 도출하면,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II-3>과 같음
  - 2009년 기준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는 26조 5,598억원으로 추정됨

<표 III-3> 2009년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규모

(단위: 억원)

부처	부담금명	광의	협의	부담금액
사회 보장성 보험료	국민연금	○	○	102,645
	고용보험	○	○	28,428
	산업재해보험	○	○	46,276
	국민건강보험	○	○	83,721
	장기요양보험	○	○	4,528
계				265,598

자료: 근로복지공단, 2009년도 산재보험·고용징수 실적분석(분석 및 통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국민연금관리공단, 「2009 국민연금 통계연보」

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보험 주요 통계」

- 사회 보장성 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를 도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도별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를 도출한 것이 <표 III-4>에 나타나 있음

<표 III-4> 연도별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규모

(단위: 억원)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합계
2003	24,651	35,918	17,865	62,206	-	140,640
2004	28,961	42,404	19,628	69,977	-	160,971
2005	31,822	48,555	21,635	77,030	-	179,042
2006	37,495	55,849	23,195	84,735	-	201,274
2007	43,200	66,612	24,735	92,699	-	227,245
2008	47,349	78,598	26,809	98,809	1,765	253,330
2009	46,276	83,721	28,428	102,645	4,528	265,598

### 3. 2009년 준조세 규모 산출

- 도출된 2009년 기준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인 26조 5,598억원을 부담금 규모에 합산하여 <표 III-5>와 같이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규모를 도출할 수 있음

<표 III-5> 2009년 준조세 규모

(단위: 억원)

	분류	부담금액
사회보장성보험료 제외	광의의 준조세	148,047
	협의의 준조세	30,540
사회보장성보험료 포함	광의의 준조세	413,645
	협의의 준조세	296,138

- 기업의 준조세 부담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 규모와 사회보험료가 포함된 준조세 규모를 구분하여 비교함
  - 사회보험료를 제외할 때 2009년 기업의 준조세 규모는 광의의 경우 14조 8,047억원이며, 협의의 경우 3조 540억원에 이르고 있음
  -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경우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광의의 경우 41조 3,645억원이고, 협의의 경우에는 29조 6,138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 사회보험료가 포함될 경우 광의의 준조세 부담은 사회보험료가 제외될 경우에 비해 2.79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기업이 부담금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비용처리가 되어 법인세 납부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준조세 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율은 2007년까지 1억원을 기준으로 25%/13%가 적용되었으며, 2008년부터 기준금액이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세율은 25%/11%로 조정됨
  - 현 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세율인하 일정에 따라 2009년에 높은 세율을 22%로 인하하였으나, 2010년부터 20%로 추가 인하하려던 계획은 2012년으로 유예되어 있는 상황임

<표 III-6> 연도별 법인세율 현황

(단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억원 초과(2007년 이전) 2억원 초과(2008년 이후)	27	27	25	25	25	25	22
1억원 이하(2007년 이전) 2억원 이하(2008년 이후)	15	15	13	13	13	11	11

주: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9%의 세율 적용

□ 법인세를 고려하여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를 산출하면, 다음의 <표 III-7>과 같음

<표 III-7> 법인세를 고려한 2009년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

(단위: 억원)

부처	사회보장성 부담	광의	협의	법인세율 감안하지 않은 부담금액	법인세 최고세율	법인세율 감안한 부담금액
사회 보장성 보험료	국민연금	○	○	102,645	0.22	80,063
	고용보험	○	○	28,428	0.22	22,174
	산업재해보험	○	○	46,276	0.22	36,095
	국민건강보험	○	○	83,721	0.22	65,302
	장기요양보험	○	○	4,528	0.22	3,532
계				265,598		207,167

자료: 근로복지공단, 2009년도 산재보험·고용정수 실적분석(분석 및 통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국민연금관리공단, 「2009 국민연금 통계연보」  
 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보험 주요 통계」

□ 사회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의 경우에도 법인세를 고려하여 부담금의 규모를 도출하면, 다음의 <표 III-8>과 같이 산출됨

<표 III-8> 2009년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 규모

(단위: 억원, %)

분 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	법인세 최고세율	법인세율 감안한 부담금
광의	148,047	0.22	115,477
협의	30,540	0.22	23,822

□ 이 결과를 종합하여 법인세를 고려한 2009년 준조세의 규모를 도출하면, 다음의 <표 III-9>와 같음

-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경우 2009년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광의의 경우 32조 2,644억원이고, 협의의 경우에는 23조 989억원에 이르고 있음
-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2009년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광의의 경우 11조 5,477억원이고, 협의의 경우에는 2조 3,822억원에 이르고 있음

<표 III-9> 법인세를 고려한 2009년 부담금 규모

(단위: 억원)

	분류	부담금액
사회보장성보험료 제외 (법인세율 감안)	광의의 준조세	115,477
	협의의 준조세	23,822
사회보장성보험료 포함 (법인세율 감안)	광의의 준조세	322,644
	협의의 준조세	230,989

#### 4. 연도별 준조세 규모 산출 및 추이 분석

- 2009년의 준조세 규모를 산출한 방법을 적용하여 2003년부터 연도별 준조세 규모를 산출하면 <표 III-10>과 같음

<표 III-10>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징수액 추이

(단위: 억원)

	광의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A)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B)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 (C)	광의의 준조세 (D=A+C)	협의의 준조세 (E=B+C)
2003	67,894	13,363	102,666	170,560	116,029
2004	74,101	14,815	117,509	191,610	132,324
2005	84,485	19,818	134,281	218,766	154,099
2006	90,849	22,070	150,956	241,805	173,026
2007	109,412	23,028	170,434	279,846	193,462
2008	114,530	23,653	189,998	304,528	213,651
2009	115,477	23,822	207,167	322,644	230,989

-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준조세의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표 III-11>과 같으며,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모두 2005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나, 광의의 경우 2007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신도시·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함

<표 III-11>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징수액 증가율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광의의 준조세	12.34	14.17	10.53	15.73	8.82	5.95
협의의 준조세	14.04	16.46	12.28	11.81	10.44	8.12

[그림 III-1]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징수액 증가율 추이



□ <표 III-12>는 총조세 및 GDP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나타내며, GDP 대비 비중을 보면,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는 광의는 약 3.04%, 협의는 약 2.17%에 이르고 있음

- 총조세 대비 비중을 보면, 광의의 준조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협의의 준조세는 2007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기준 광의는 15.39%, 협의는 11.0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표 III-12> 정부의 세수 및 GDP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단위: 억원, %)

	조세	GDP	광의의 준조세 D	협의의 준조세 E	조세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광의	협의	광의	협의
2003	1,478,000	7,671,137	170,560	116,029	11.54	7.85	2.22	1.51
2004	1,520,000	8,268,927	191,610	132,324	12.61	8.71	2.32	1.60
2005	1,634,000	8,652,409	218,766	154,099	13.39	9.43	2.53	1.78
2006	1,793,000	9,087,438	241,805	173,026	13.49	9.65	2.66	1.90
2007	2,050,000	9,750,130	279,846	193,462	13.65	9.44	2.87	1.98
2008	2,128,000	10,264,518	304,528	213,651	14.31	10.04	2.97	2.08
2009	2,097,000	10,630,591	322,644	230,989	15.39	11.02	3.04	2.17

주: 1. 조세: 100억 이상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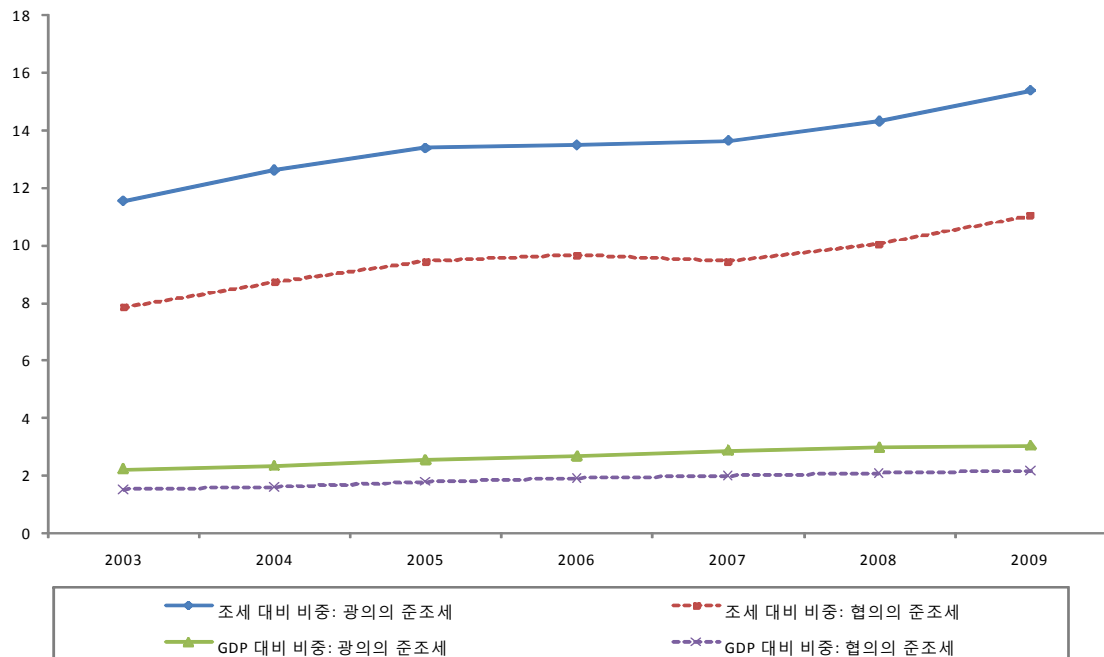
2. GDP: 원화표시 명목 GDP, 2005년 기준

3. 법인세를 감안하여 도출한 준조세 및 사회보험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I-2] 조세 및 GDP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비중의 변화(2003-2009)

(단위: %)



- <표 III-13>은 각 연도별 법인세수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나타내며, 광의의 준조세는 2003년 76.33%에서 2004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05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06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수의 변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2007년에 9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조세 이외의 부담이 거의 법인세수와 유사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8년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준조세의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원인이 있음
  - 협의의 준조세도 연도별 추세는 광의와 유사하며, 2008년 기준 57.27%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III-13> 법인세 징수액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단위: 억원, %)

	법인세 징수액	광의의 준조세	협의의 준조세	법인세 징수액 대비 비중	
				광의	협의
2003	223,461	170,560	116,029	76.33	51.92
2004	215,501	191,610	132,324	88.91	61.40
2005	267,150	218,766	154,099	81.89	57.68
2006	265,356	241,805	173,026	91.12	65.21
2007	298,851	279,846	193,462	93.64	64.74
2008	373,068	304,528	213,651	81.63	57.27
2009		322,644	230,989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표 III-14>는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나타내며, 광의의 준조세는 2004년 21.14%까지 상승하였다가 2005년 이후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의의 경우 약 13% 수준에서 광의의 준조세 비중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III-14> 각사업연도 당기순이익(흑자법인)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단위: 억원, %)

	흑자법인 당기순이익	광의의 준조세	협의의 준조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대비 비중	
				광의	협의
2003	859,219	170,560	116,029	19.85	13.50
2004	906,505	191,610	132,324	21.14	14.60
2005	1,206,530	218,766	154,099	18.13	12.77
2006	1,330,676	241,805	173,026	18.17	13.00
2007	1,493,361	279,846	193,462	18.74	12.95
2008	1,713,555	304,528	213,651	17.77	12.47
2009		322,644	230,989	-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IV. 기부금의 비자발성 조사

### 1. 기업의 준조세 실태조사

#### 가. 실태조사 개요

- 2010년 준조세 실태 조사는 2009년 기준 3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음
- 매출 300억원 이상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중 5,137개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1,823개 기업에서 설문 결과가 회수되어 35.4%의 응답률을 기록하였음
- 표본기업에 대한 자료 수집은 전화, 팩스, e-mail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지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02일부터 2010년 11월 08일까지 37일간 수행되었음

<표 IV-1> 2010년 업종 및 기업형태별 응답자 특성

(단위: 개, %)

구 분	기업 수	비 중
업종별	제조업	911 50.0
	건설업	273 15.0
	도소매업	283 15.5
	금융업	101 5.5
	운수업	69 3.8
	기타	186 10.2
	합계	1,823 100.0
법인규모별	대기업	270 14.8
	중소기업	1,553 85.2
	합계	1,823 100.0
상장·비상장	거래소	143 7.8
	코스닥	178 9.8
	비상장	1,502 82.4
	합계	1,823 100.0

- 조사대상 기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업·운수업·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조업이 911개로 50.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도소매업이 283개업으로 15.5%를 차지하며 건설업은 273개로 15.0%를 차지함
  - 법인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14.8%로 270개, 중소기업이 1,553개로 85.2%를 차지함
  - 상장·비상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총 1,823개의 응답기업 중 거래소 상장기업은 143개이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178개이며, 비상장기업은 1,502개로 각각 7.8%, 9.8%, 82.4%를 차지함

## 나. 실태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기부금 지출의 강제성 정도를 통해 실제 기부금 지출액 중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산출하고자 함
  - 기부금 중 준조세 성격의 금액은 기부금 총액에 '완전강제적'과 '다소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 수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함

### 1) 기부금별 자발성 결과

- 2010년 설문조사 결과를 기부금별로 나누어 자발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2>에 나타나 있음
  - 기부금별 자발성을 살펴보면, 다른 기부금에 비해 법정기부금이 상대적으로 강제적이며, 지출동기가 '완전강제적' 또는 '다소강제적'이라는 의견은 법정기부금에서는 8.2%이지만, 특례기부금에서는 2.5%이고, 지정기부금에서는 1.3%에 해당함
  - 응답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지출동기가 '완전강제적' 또는 '다소강제적'이라는 의견에 '중립적'이라는 의견을 포함하면, 비자발성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18.2%, 특례기부금은 12.2%, 지정기부금은 11.3%으로 확대됨

<표 IV-2> 2010년 기부금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

		지출 동 기(N/%)					합계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법정기부금	응답 수	149	161	38	31	0	379
	비율	39.3	42.5	10.0	8.2	-	100.0
		39.3	42.5	10.0	8.20		
		39.3	42.5	18.20			
특례기부금	응답 수	306	262	63	15	1	647
	비율	47.3	40.5	9.7	2.3	0.2	100.0
		47.3	40.5	9.7	2.50		
		47.3	40.5	12.20			
지정기부금	응답 수	1,186	569	198	24	1	1,978
	비율	60.0	28.8	10.0	1.2	0.1	100.0
		60.0	28.8	10.0	1.30		
		60.0	28.8	11.30			

주: 중복 응답한 업체가 존재하며, 각 항목별 소계는 응답 수의 합을 의미함.

### 가) 법정기부금

-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업체는 353개에 이르며, 설문조사 결과는 <표 IV-3>에 나타난 바와 같음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영역에 기부한 기업은 114개로 평균 48억 2,467만원을 기부하였으며, 비자발성은 19개 기업이 '다소강제적'으로 응답하여 16.8%에 이르고, '중립적' 응답까지 확대할 경우 39개 기업 34.5%까지 확대됨
  -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에는 22개 기업이 기부하였으며, 평균 1,924만원을 기부하였고, 이 중 5개 기업이 '다소강제적'으로 응답하여 22.7%의 비중을 차지하여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중립적'까지 확대할 경우 비자발성의 비중이 27.2%에 이름

<표 IV-3> 법정기부금 유형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만원, %)

		평균금액 (만원)	지출동기(N/%)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응답 수	114	25	49	20	19	0	113
	비율	482,467.95	22.1	43.4	17.7	16.8	-	100.0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응답 수	22	7	9	1	5	0	22
	비율	1,923.95	31.8	40.9	4.5	22.7	-	100.0
이재민 구호 금품	응답 수	45	21	21	2	1	0	45
	비율	8,778.07	46.7	46.7	4.4	2.2	-	100.0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 외	응답 수	174	86	70	14	4	0	174
	비율	56,216.84	49.4	40.2	8.0	2.3	-	100.0
기타기부단체	응답 수	25	10	12	1	2	0	25
	비율	4,297.44	40.0	48.0	4.0	8.0	-	100.0

주: 1. 전체 법정기부금 납부 기업의 총합이 353개를 초과하는 까닭은 해당항목이 응답 수임에 유의  
 2.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의 응답 수가 평균금액의 경우에는 114개이나 전체는 113개인 까닭은 평균금액은 기입하고, 지출동기는 기입하지 않은 답변이 존재하기 때문임

## 나) 특례기부금

- 조사대상 기업 중 특례기부금에 지출한 기업은 총 550개 기업이며 특례기부금 지출에 응답한 업체에 대한 유형별 설문조사 결과는 <표 IV-4>에 나타나 있음
  - 가장 많은 기부금을 기부한 영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239개 회사가 기부했다고 응답하였음
  - 비자발성을 '중립적' 응답까지 확대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4.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7.4%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IV-4> 특례기부금의 유형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만원, %)

		평균금액 (만원)	지 출 동 기(N/%)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사립학교병원	응답 수	39	22	9	6	1	1	39
	비율	5,175.46	56.4	23.1	15.4	2.6	2.6%	100.0
한국과학기술원 등	응답 수	4	2	1	1	0	0	4
	비율	375.00	50.0	25.0	25.0	-	-	1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응답 수	239	100	128	9	1	0	238
	비율	27,246.69	42.0	53.8	3.8	0.4	-	100.0
문화예술진흥기금	응답 수	28	14	8	5	1	0	28
	비율	99,980.64	50.0	28.6	17.9	3.6	-	100.0
사내근로복지기금	응답 수	108	67	33	8	0	0	108
	비율	70,826.78	62.0	30.6	7.4	-	-	100.0
특정연구기관	응답 수	4	2	1	0	1	0	4
	비율	26,800.00	50.0	25.0	-	25.0	-	1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응답 수	5	3	1	0	1	0	5
	비율	1,164.00	60.0	20.0	-	20.0	-	100.0
한국교육방송공사	응답 수	2	1	1	0	0	0	2
	비율	225.00	50.0	50.0	-	-	-	100.0
한국국제교류재단	응답 수	26	16	7	3	0	0	26
	비율	12,622.15	61.5	26.9	11.5	-	-	100.0
복지증진 비영리법인	응답 수	35	25	8	2	0	0	35
	비율	1,024.23	71.4	22.9	5.7	-	-	100.0
국민신탁법인	응답 수	1	1	0	0	0	0	1
	비율	1.00	100.0	-	-	-	-	100.0
박물관미술관	응답 수	4	2	2	0	0	0	4
	비율	1,125.00	50.0	50.0	-	-	-	100.0
국제행사조직위원회	응답 수	2	1	1	0	0	0	2
	비율	330.00	50.0	50.0	-	-	-	100.0
휴면예금관리재단	응답 수	8	0	1	0	7	0	8
	비율	93,625.00	-	12.5	-	87.5	-	100.0
저소득층 생활안정 비영리법인	응답 수	16	11	5	0	0	0	16
	비율	1,844.69	68.8	31.3	-	-	-	100.0
대학기부금 대상	응답 수	88	24	42	21	1	0	88
	비율	16,561.48	27.3	47.7	23.9	1.1	-	100.0
기타기부단체	응답 수	41	15	14	8	2	0	39
	비율	10,851.27	38.5	35.9	20.5	5.1	-	100.0

주: 중복 응답한 업체가 존재하므로 각 항목별 소계의 합과 응답업체 전체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

## 다) 지정기부금

□ 조사대상 기업 중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기업의 기부는 총 1,502개사이며 <표 IV-5>에 설문결과가 나타나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의 경우 '다소강제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0.9%, '중립적'까지 확대하는 경우 6.3%로 비자발성이 가장 낮으며, 특별회비 및 임의단체 회비의 경우 '다소강제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3%, '중립적'까지 확대하면 30.6%로 가장 비자발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IV-5> 지정기부금의 유형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만원, %)

	평균금액 (만원)	지출동기(N/%)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사회복지시설	빈도	468	270	168	25	4	0	467
	비율	11,388.50	57.8	36.0	5.4	0.9	-	100.0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빈도	448	315	95	34	1	0	445
	비율	2,346.48	70.8	21.3	7.6	0.2	-	100.0
재경부장관 지정단체	빈도	578	333	172	63	7	0	575
	비율	17,680.70	57.9	29.9	11.0	1.2	-	100.0
기획재정부령 지정기부금단체	빈도	278	169	61	43	3	0	276
	비율	660.38	61.2	22.1	15.6	1.1	-	100.0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빈도	75	31	21	22	1	0	75
	비율	10,622.09	41.3	28.0	29.3	1.3	-	100.0
기타 기부단체	빈도	140	68	52	11	8	1	140
	비율	9,552.71	48.6	37.1	7.9	5.7	.7%	100.0

주: 중복 응답한 업체가 존재하므로 각 항목별 소계의 합과 응답업체 전체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

## 2) 기업특성별 자발성 결과

□ 업종별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를 <표 IV-6>을 통해 살펴보면, 법정기부금의 경우 건설업에서 기부금의 강제성에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음

- 기부금의 비자발성을 '다소강제적' 이상으로 할 경우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각각 6.1%, 6.5%의 비중을 보이며, '중립적'까지 포함하면 건설업의 경우 20.0%이고, 금융업의 경우 19.60%로 제조업 10.0%, 도소매업 12.5%에 비해 비자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V-6> 업종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

		지 출 동 기(N/%)					합계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업종	제조업	응답 수	810	405	115	19	2	1,351
		비율	60.0	30.0	8.50	1.40	0.10	
			60.0	30.0	8.50	1.50		
			60.0	30.0	10.00			
	건설업	응답 수	225	194	73	32	0	524
		비율	42.9	37.0	13.90	6.10	0.00	
			42.9	37.0	13.90	6.10		
			42.9	37.0	20.00			
	도소매업	응답 수	224	219	59	4	0	506
		비율	44.3	43.3	11.70	0.80	0.00	
			44.3	43.3	11.70	0.80		
			44.3	43.3	12.50			
	금융업	응답 수	95	65	26	13	0	199
		비율	47.7	32.7	13.10	6.50	0.00	
			47.7	32.7	13.10	6.50		
			47.7	32.7	19.60			
	운수업	응답 수	102	12	2	1	0	117
		비율	87.2	10.3	1.70	0.90	0.00	
			87.2	10.3	1.70	0.90		
			87.2	10.3	2.60			
기타	응답 수	185	97	24	1	0	307	
	비율	60.3	31.6	7.8	0.3	0.0		
		60.3	31.6	7.8	0.3			
		60.3	31.6	8.2				
합계	응답 수	1,641	992	299	70	2	3,004	
	비율	54.6	33.0	10.0	2.3	0.1	100.0	

□ <표 IV-7>은 비자발성을 법인규모별로 나타내며 ‘다소강제적’ 이상은 대기업의 경우 4.6%, 중소기업의 경우 1.9%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중립적’까지 확대할 경우 대기업은 17%, 중소기업은 11.3%로 대기업의 비자발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IV-7> 법인규모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

		지 출 동 기(N/%)					합계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대기업	응답 수	253	237	73	27	0	590
	비율	42.9	40.2	12.4	4.6	0.0	100.0
		42.9	40.2	12.4	4.6		
		42.9	40.2	17.0			
중소기업	응답 수	1,388	755	226	43	2	2,414
	비율	57.5	31.3	9.4	1.8	0.1	100.0
		57.5	31.3	9.4	1.9		
		57.5	31.3	11.3			
합계	응답 수	1,641	992	299	70	2	3,004
	비율	54.6	33.0	10.0	2.3	0.1	100.0

### 3) 분야별 자발성 결과

- 분야별 기부금의 자발성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가 <표 IV-8>에 정리되어 있음
- 분야별 설문조사의 문항은 Giving USA 및 UK Giving과 같은 외국의 기부 관련 통계의 분류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복지 분야의 경우 장애인복지, 영유아 및 아동복지, 노인복지, 노숙자자활사업의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음
  - 전체 기부 분야 중 가장 강제성이 높은 분야는 ‘환경 생태계 보전’ 영역으로 ‘다소강제적’ 이상에 응답한 기업이 33.3%를 차지하며, ‘중립적’에 응답한 기업까지 더하면, 전체 기부 기업의 44.4%가 기부금이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전체 기부 분야 중 두번째로 강제성이 높은 분야는 '지역사회발전' 영역으로 '다소강제적'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4.6%에 불과하지만, '중립적'까지 확대할 경우 33.5%의 기업이 해당 기부금이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IV-8> 분야별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지출동기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종교	비율	66.3	32.7	1.0	0.0	0.0	100.0
					0.0		
교육학술	비율	42.0	49.6	7.1	1.3	0.0	100.0
					1.3		
시민사회 구축사업	비율	76.1	17.9	3.0	1.5	1.5	100.0
					3.0		
건강	비율	69.6	26.1	4.3	0.0	0.0	100.0
					0.0		
예술·문화	비율	39.7	42.9	15.9	1.6	0.0	100.0
					1.6		
국제구호	비율	48.4	46.3	4.7	0.5	0.0	100.0
					0.5		
환경생태계보전	비율	22.2	33.3	11.1	33.3	0.0	100.0
					33.3		
복지	전체	58.0	30.9	10.5	0.6	0.0	100.0
					0.6		
장애인 복지	비율	62.8	35.5	1.3	0.4	0.0	100.0
					0.4		
영유아 및 아동복지	비율	56.7	41.0	2.0	0.3	0.0	100.0
					0.3		
				2.3			

			지출동기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노인 복지	비율		60.2	36.1	2.8	0.9	0.0	100.0
						0.9		
						3.7		
노숙자 자활사업	비율		66.7	33.3	0.0	0.0	0.0	100.0
						0.0		
						0.0		
스포츠	비율		30.8	53.8	11.5	3.8	0.0	100.0
						3.8		
						15.3		
병원 및 의료산업	비율		55.2	31.40	12.4	1.0	0.0	100.0
						1.0		
						13.4		
지역사회 발전	비율		41.1	25.3	28.9	4.1	0.5	100.0
						4.6		
						33.5		
건전 경제활동촉진	비율		18.2	81.8	0.0	0.0	0.0	100.0
						0.0		
						0.0		
기타	비율		53.0	33.7	6.0	6.0	1.2	100.0
						7.2		
						13.2		

#### 다. 준조세 산출

<표 IV-9> 2009년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

(단위: 억원, %)

		2009 기부금액 <sup>1)</sup>	법인세율	지출동기 <sup>2)</sup>	준조세에 포함되는 규모
완전강제적 다소강제적	법정기부금	9,437	22	8.2	604
	특례기부금	9,516	22	2.5	186
	지정기부금	15,054	22	1.3	153

주: 1) 2009 기부금액은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위 표의 2009년 기부금액이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에 속하는 신고분을 의미함

2) 지출동기는 '완전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수의 비율을 말함

-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출 동기가 '완전강제적' 또는 '다소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을 이용하여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추정하면 2009년 기부금 신고액은 3조 4,007억원이고 이 중 법정기부금 신고액은 9,437억원임.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각각 9,516억원과 1조 5,054억원을 기록함
  - 각 기부금별로 손금산입의 한도에 차이가 있으나 기업기부의 대부분이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액 손금산입 되는 것으로 계산함
  - 법정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비중은 8.2%로 비자발적 기부금의 규모는 9,437억 원×0.082(비자발적 비중)을 계산하면 774억원이며, 이에 (1-0.22)를 곱하면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할 수 있음=> 약 604억원이 준조세의 규모에 포함됨
  - 같은 방법으로 특례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구하면 9,516억원×0.025(비자발적 비중)×(1-0.22)=> 186억원이 준조세의 규모에 포함됨
  - 같은 방법으로 지정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구하면 1조 5,054억원×0.013(비자발적 비중)×(1-0.22)=> 약 153억원이 준조세의 규모에 포함됨
  
- <표 IV-10>은 비자발적 기부금의 범위를 '중립적'으로 응답한 기부금으로 확대할 경우 준조세에 포함되는 각 기부금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표 IV-10> 2009년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

(단위: 억원, %)

		2009 기부금액 <sup>1)</sup>	법인세율	지출동기 <sup>2)</sup>	준조세에 포함되는 규모
완전강제적	법정기부금	9,437	22	18.2	1,340
다소강제적	특례기부금	9,516	22	12.2	906
중립적	지정기부금	15,054	22	11.3	1,327

주: 1) 2009 기부금액은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위 표의 2009년 기부금액이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에 속하는 신고분을 의미함  
 2) 지출동기는 '완전강제적', '다소 강제적',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수의 비율을 말함

- 같은 방법으로 법정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구하면 9,437억 원×0.182(비자발적 비중)×(1-0.22)=> 약 1,340억원이 준조세의 규모에 포함됨

- 같은 방법으로 특례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구하면 9,516억 원×0.122(비자발적 비중)×(1-0.22)=> 약 906억원이 준조세의 규모에 포함됨
- 같은 방법으로 지정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구하면 1조 5,054억원×0.113(비자발적 비중)×(1-0.22)=> 약 1,327억원이 준조세의 규모에 포함됨

□ 이상에서 산출한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표 IV-11>) 앞에서 구한 준조세의 규모에 추가하여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면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IV-11> 2009년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

(단위: 억원)

		기부금 준조세액
기부금 I	완전강제적, 다소강제적	943
기부금 II	완전강제적, 다소강제적, 중립적	3,573

주: 1) 기부금 I 은 '다소강제적' 및 '완전강제적' 응답을 기준으로 산출  
 2) 기부금 II 는 기부금 I 에 '중립적' 응답을 포함하여 산출

<표 IV-12> 기부금을 고려한 2009년 준조세 규모

(단위: 억원)

		분류	준조세액
기부금 제외	사회보험료 제외	광의의 준조세	115,477
		협의의 준조세	23,822
	사회보험료 포함	광의의 준조세	322,644
		협의의 준조세	230,989
기부금 I 포함	사회보험료 제외	광의의 준조세	116,420
		협의의 준조세	24,765
	사회보험료 포함	광의의 준조세	323,587
		협의의 준조세	231,932
기부금 II 포함	사회보험료 제외	광의의 준조세	119,050
		협의의 준조세	27,395
	사회보험료 포함	광의의 준조세	326,217
		협의의 준조세	234,562

주: 1. 기부금 I 은 '다소강제적' 및 '완전강제적' 응답을 기준으로 산출  
 2. 기부금 II 는 기부금 I 에 '중립적' 응답을 포함하여 산출  
 3. 모든 수치는 법인세 소득공제를 고려한 것임.

## V. 요약 및 정책방향

- 본 연구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에 해당하는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준조세의 범위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준조세의 추이를 파악하고, 준조세가 GDP 및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음
  - 또한 준조세가 법인세수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여 조금 더 미시적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의 부담규모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각 기부금 별로 산출하였으며, 이를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하여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였음
  
- 조세 이외의 모든 부담을 포함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부담금 및 비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기준 그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합하고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20조 7,167억원에 이룸
  -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의 총합계에서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11조 5,477억원에 해당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 부담금 11조 5,477억원을 합제한 것으로 32조 2,644억원에 이룸

-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1)사업자가 받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2)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정의함.
  - 따라서 협의로 준조세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회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비자발적 기부금이 포함됨.
  - 협의의 준조세 정의를 기준으로 준조세 규모를 산출하면 부담금 2조 3,822억원,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으로 23조 989억원에 이룸.
  
- GDP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보면,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는 광의는 약 3.04%, 협의는 약 2.17%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총조세 대비 비중을 보면, 협의의 준조세는 2007년 일시적으로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협의 및 광의의 준조세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기준 광의는 15.39%, 협의는 11.0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법인세수 대비 준조세의 비중은 법인세수의 등락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광의의 경우 2007년 9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조세 이외의 부담이 거의 법인세수와 유사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8년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준조세의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원인이 있음
  - 협의의 준조세도 연도별 추세는 광의와 유사하며, 2008년 기준 법인세수 대비 57.27%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보면, 광의의 준조세는 2004년 21.14%까지 상승하였다가 2005년 이후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의의 경우 약 13% 수준에서 광의의 준조세 비중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매출 300억원 이상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부금 지출의 비자발성 정도를 파악하고, 실제 기부금 지출액 중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산출함
  - 기부금 중 준조세 성격의 금액은 기부금 총액에 ‘완전 강제적’과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 수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함
  
- 다른 기부금에 비해 법정기부금이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이며, 지출동기가 ‘완전강제적’ 또는 ‘다소강제적’이라는 의견은 법정기부금에서는 8.2%, 특례기부금에서는 2.5%, 지정기부금에서는 1.3%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비자발성을 ‘중립적’이라는 응답까지 확대하는 경우, 비자발성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18.2%, 특례기부금은 12.2%, 지정기부금은 11.3%로 확대됨
  
- 업종별로 기부금의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정기부금의 경우 건설업에서 기부금의 강제성에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음
  - 기부금의 비자발성을 ‘다소강제적’ 이상으로 할 경우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각각 6.1%, 6.5%의 비중을 보이며, ‘중립적’까지 포함하면 건설업의 경우 20.0%이고, 금융업의 경우 19.6%로 제조업 10.0%, 도소매업 12.5%에 비해 비자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부금의 자발성을 법인규모별로 보면, ‘다소강제적’ 이상은 대기업의 경우 4.6%, 중소기업의 경우 1.9%의 비중을 보이고, ‘중립적’까지 확대할 경우 대기업은 17%, 중소기업은 11.3%로 대기업의 비자발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분야별로 기부금의 자발성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기부 분야 중 가장 강제성이 높은 분야는 '환경 생태계 보전' 영역으로 '다소강제적' 이상에 응답한 기업이 33.3%를 차지하며, '중립적'에 응답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부 기업의 44.4%가 기부금이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두번째로 강제성이 높은 분야는 '지역사회발전' 영역으로 '다소강제적'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4.6%에 불과하지만, '중립적'까지 확대할 경우 33.5%의 기업이 해당 기부금이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지출 동기가 '완전강제적' 또는 '다소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을 이용하여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추정하면 943억원에 이룸.
  - 비자발적 기부금의 범위를 '중립적'으로 응답한 기부금으로 확대할 경우 준조세에 포함되는 기부금의 규모 3,573억원에 해당함.
  
- 이상에서 산출한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앞에서 구한 준조세의 규모에 추가하여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면 최대 32조 6,217억원에 이룸.
  - 광의 준조세 규모를 산출하면,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 부담금 11조 5,47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943억 또는 3,573억원을 합계한 것으로 32조 3,587억원 또는 32조 6,217억원에 이룸.
  - 협의의 준조세 정의를 기준으로 준조세 규모를 산출하면 부담금 2조 3,822억원,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943억 또는 3,573억원으로 총 23조 1,932억원 또는 23조 4,562억원에 이룸.
  
- 제 I 장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를 조세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기업이 지는 부담으로 정의하였지만, 수익자부담원칙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의 경우 외부효과의 교정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담으로 분류되고, 사회보험료의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 또는 유사한 형태로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으로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의 규모는 2조 3,822억원 정도임.
  -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추가하면 전체 규모가 2조 4,765억원 또는 2조 7,395억원에 해당함.
-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정확한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은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과 관련된 조세정책 및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조세 이외의 부담과 관련된 정책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선이 요구되는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된 부담금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협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부담금 운영이 도입취지 및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이 요구됨
- 현재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부담금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담금이 상당수 있으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개별 부담금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생략함
- 개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부담금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부담금 부과취지인 국민건강증진사업에는 31.3%가 사용되는 반면,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51.7%가 사용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경우

도 대부분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담금보다는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도입취지를 보면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입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담금의 취지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부담금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또한 부과대상을 보면, 시설물사용자가 아닌 시설물소유자가 부과대상이며, 경유자동차의 경우도 경유자동차 사용에 대한 부과가 아니고 소유에 대한 부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해당하지 않음
  - 추가로 부과방법을 보면, 부담금 도입취지에서 밝힌 오염저감을 통한 환경개선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므로 본 부담금은 환경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준조세를 축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음
  - 기업의 부담을 덜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부과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지출도 예산의 틀 내에서 결정할 수 있어서 부과 및 지출 모두 근거가 명확해지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음

## 참고문헌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주요 통계』, 각 연도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통계연보』, 각 연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각 연도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 고용징수 실적분석(분석 및 통계표)』, 각 연도
- 기획재정부, 『부담금 운용 종합 보고서』, 각 연도
- 손원익 · 김상현 · 김진수 · 박기백 · 한도숙,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12
- 손원익 · 정재호 · 김형준 · 김상현,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4. 12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